법무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6.(금)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소송 기간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혼외자녀가 자신의 부 또는 모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붙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를 위한 안내문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주도현	(02-2110-44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를 위한 안내문**

한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신가요?

-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기타(G-1-3) 체류자격과 취업 안내 -

법무부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안정적인 체류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G-1-3).

Q1. 누가 기타(G-1-3)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는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단기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지청구소송 진행 사실과 한국인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현재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데, 기타(G-1-3)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는 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10만 원)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등 **인지청구소송 진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촬영한 사진 등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혼외자녀의 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양육자의 경우) 등이며, 심사 과정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되며,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G-1-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Q3. 기타(G-1-3) 자격으로 체류하면 취업할 수 있나요?

○ 기타(G-1-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입니다.

○ 다만, 외국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G-1-3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먼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취업 허용에 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통해 취업허용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취업하려는 사업장이 정해지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12만 원)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허용 관련 상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 → **인도적 사정 인정** → **취업처 확인 및 고용계약 체결**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허가 후 취업**

Q5.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어떤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나요?

○ 취업제한 분야[참고]를 제외하고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전문분야(E-1~E-7)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체류자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취업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근무처 등 취업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참고]

취업 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